

정 선 군

군보는 공문서로의 효력을 갖는다.

군 보

<http://www.jeongseon.go.kr/>

제402호 2016. 11. 10. (목)

【조 례】

- 정선군 조례 제2524호 정선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1
- 정선군 조례 제2525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5
- 정선군 조례 제2526호 정선군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 8
- 정선군 조례 제2527호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16
- 정선군 조례 제2528호 정선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17
- 정선군 조례 제2529호 정선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2
- 정선군 조례 제2530호 정선군 교통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26

【규 칙】

- 정선군 규칙 제1276호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9

조 례

제233회 정선군의회(2016. 10. 21.)에서 의결된 정선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1월 10일

정 선 군 수

인

정선군 조례 제2524호

정선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정선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3항에 따라”로 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범위내”를 “범위”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조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출케”를 “제출하게”로,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1인을 포함하여 6-9명”을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로 한다.

제11조제3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14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정선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정선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

② 정선군사북공공도서관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1제4항 중 “「정선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

③ 정선군 아리랑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정선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

④ 정선군 아리랑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 중 “「정선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

⑤ 정선군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정선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

⑥ 정선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 중 “「정선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

⑦ 정선군 군립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정선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정선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지방자치법 제95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 의하여</u>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일부를 군산하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 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군수의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 3. (생략) 4. <u>기타</u> 시설관리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군수는 제1항 <u>각호</u>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한다. ③ (생략)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u>별위내</u>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수탁기관 선정) ① <u>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u>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u>제출</u>하게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u>제5조의 규정에 의한</u>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제7조(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① (생략)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u>1인</u>을 포함하여 <u>6-9명</u>의 위원으로 하되, 위원장을 비롯한 부위원장과 위원은 관계공무원과 당해 전문가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u>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u>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 ----- ----- ----- -----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 ----- ----- ----- 1. ~ 3. (현행과 같음) 4. <u>그 밖에</u> ----- ② ----- <u>각 호</u>----- ----- ③ (현행과 같음) ④ ----- <u>별위</u>----- ----- 제6조(수탁기관 선정) ① <u>제5조에 따라</u> ----- ----- ② ----- ----- <u>제출</u>하게 ----- ----- <u>제5조에 따른</u> ----- 제7조(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u>1명</u>을 포함하여 <u>6명</u> 이상 <u>9명 이내</u>----- ----- -----

③ ~ ⑤ (생 략) 제11조(지휘·감독) ①·② (생 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 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지휘·감독)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 ----- -----. 제14조(시행규칙) ----- 필요----- -----.
---	--

개 정 이 유

- 상위 법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사무의 위임에 관한 인용 조문이 변경되어 일부 개정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상위법 근거조항 변경(안 제1조)
- 상위법 개정에 따라 사무의 위임 근거를 「지방자치법」 제95조에서 제104조제3항으로 변경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은 중앙정부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는 적용되지 아니함으로 삭제 변경되어 일부 개정하고자 함.

제233회 정선군의회(2016. 10. 21.)에서 의결된 정선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1월 10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525호

정선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별표1의2”를 “별표 1의2”로 한다.

제20조제2항 전단 중 “제18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을 “법령에 따른 의무 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한다.

제23조제1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⑪ 군수는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 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3.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장기재직휴가 5일을 사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3조제11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추가 발생하는 15일에 대해서는 해당 재직기간 중 사용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복무선서) ①·② (생략)	제2조(복무선서)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u>별표1의2</u> 와 같이 한다.	③ ----- <u>별표 1의2</u> -----.
제20조(연가일수 공제) ① (생략)	제20조(연가일수 공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8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해당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 이 경우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월할계산에 의하여 산정된 연가일수가 소숫점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	② 법령에 따른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 ----- ----- ----- -.
③·④ (생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21조(병가)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20조제3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1조(병가) ① ----- -----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전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2. <u>감염병</u> ----- -----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3조(특별휴가) ① ~ ⑩ (생략)	제23조(특별휴가) ① ~ ⑩ (현행과 같음)
⑪ 군수는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공무원에게 재직기간 중 1회에 한정하여 5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은 영 제7조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⑪ 군수는 공무수행 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은 제18조제2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3.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

개 정 이 유

- 공무원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부여하고 활기 있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10년 이상 장기재직한 공무원에게 특별휴가(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상위법령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규정 되어 있는 조문의 일부를 정비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임신·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의 경우 휴직기간에 대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도록 함(안 제20조제2항)
- 1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10일, 20년이상 30년미만 재직한 공무원에게 20일, 30년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2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재직기간마다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안 제23조제11항)

제233회 정선군의회(2016. 10. 21.)에서 의결된 정선군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1월 10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526호

정선군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

정선군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정선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정선군의 양성평등정책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존중,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의 해소를 통하여 여성과 남성이 가족과 사회생활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하고 조화로운 동반자적 관계를 확립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차별 없이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동등하게 참여함으로써 평등·발전·평화의 이념이 구현되는 남녀관계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성차별”이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임신, 출산,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등을 원인으로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같은 조건을 적용하더라도 특정 성에 대하여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와 성별을 이유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3. “소속기관”이란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실·과·단, 직속기관·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제4조(군의 책무)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를 진다.

제5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정선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군민은 군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과 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양성평등 정책

제7조(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성평등 정책의 기본방향
2. 양성평등 정책 추진 목표
 - 가. 양성평등의 촉진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 나.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 다. 여성의 권익 및 복지 증진
3. 양성평등 정책 추진 체계
4. 양성평등에 대한 주요시책
5. 양성평등 정책 추진과 관련한 자원 조달방법
6.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내용

③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단체,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 단체, 개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양성평등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정선군양성평등위원회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8조(적극적 조치) 군수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어느 한 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양성 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군정참여 확대) ① 군수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때에는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정선군양성평등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구성·운영하는 회의 또는 심의회 등에 여성의 참여가 균등하게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공직 등의 참여촉진) ① 군수는 여성의 평등한 공직기회 참여를 위하여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1조의2에 따른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직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특정 성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양성평등 채용목표제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1조(경제활동 참여촉진) ① 군수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여성의 취업·창업 및 기업활동 참여 촉진과 여성인력개발 활성화
2.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5조에 따른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한 시책
3. 임신·출산 및 수유기간 동안에 여성이 특별히 보호받도록 조치하고, 이로 인한 불이익한 처우 방지

4. 근로자의 모집·채용·교육훈련·승진·퇴직·경력개발·임금 등 고용전반에 걸친 성평등 시책

5. 기간제 근로여성 및 단시간 근로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금지 및 고용환경 개선

② 군수 및 소속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구매를 촉진하고, 기업에 자금을 지원할 때 여성기업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일·가족 양립 지원) 군수는 양성이 사회생활과 가족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영유아 보육시설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서비스의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
2. 직장보육시설의 확충 노력
3. 방과 후 아동보육의 활성화
4. 육아휴직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
5. 남성의 육아휴직 장려 및 활성화
6.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7. 일·가족 양립에 관한 상담 지원
8.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친화 제도의 확산
9. 그 밖에 일과 가족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평등한 가족생활) ① 군수는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에 따라 민주적이며 양성평등한 가족생활 실천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한부모 가족, 장애인가족, 다문화가족 등 다양한 가족이 차별받지 아니하고 평등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모·부성의 권리보장) ① 군수는 임신·출산·수유 등 모성을 보호하고, 가족과 직장 그리고 지역 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가정내 임신·출산·양육 등의 과정에서 남성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고 부성의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양성평등 의식제고) ① 군수는 공공기관·가정·영유아시설·학교·사회교육시설·기업에서 양성평등에 관한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각종 사회교육시설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과정이 편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등) ① 군수와 소속기관의 장은 문서, 회의, 근무행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예방하여 양성평등한 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성차별 및 성희롱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군수와 소속기관의 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사태가 발생하면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자가 해고 또는 그 밖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7조(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의 방지 등) 군수는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예방교육
2.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교육 또는 직업훈련 실시
3.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해자 교육

제18조(여성의 복지증진) ① 군수는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인, 장애인, 한부모, 미혼모, 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 여성의 평등한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교육·직업훈련 및 자립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여성의 복지증진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여성지도자 육성 등 여성능력 배양사업
2. 성·가정폭력, 성매매·성희롱 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
3. 아동·여성인권 지역연대 추진사업
4. 경력단절여성 등에 대한 경제활동 참여 지원을 위한 사업

④ 군수는 제3항에서 규정된 사업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9조(여성친화적 도시공간 및 시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공간이나 시설 등을 조성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하고 여성의 안전과 편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여성친화적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등 도시 인프라
2.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3. 주거단지, 주택 등 건축물

제20조(건강증진) 군수는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하여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접근을 도모하고, 생애주기에 따른 여성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21조(양성평등 관련 정보 제공) ① 군수는 양성평등 관련 정보를 수집·축적·관리하여 군민에게 최신의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민에게 군의 양성평등 정책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양성평등백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제22조(주요정책 추진실적의 평가) 군수는 필요한 경우 주요 양성평등 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다.

제23조(여성의 열 선양) ① 군수는 여성의 정체성 확립과 역사의식 강화를 위하여 군내의 역사적인 여성 인물을 발굴하거나 계승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여성의 열 선양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4조(기념행사의 실시 및 지원) ① 군수는 법 제38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행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행사를 추진하는 여성단체,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조(여성 관련시설의 설치·운영) 군수는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6조(시민사회와의 협력과 지원) 군수는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군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단체·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7조(국제협력 지원) 군수는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 여성의 참여를 확대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여성의 국제적 연대와 협력강화를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유공자 표창) 군수는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현저하게 공헌한 단체, 개인 또는 소속 공무원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3장 양성평등위원회

제29조(양성평등위원회 설치) 군수는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정선군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양성평등 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성별영향분석평가 및 성인지 예산에 관한 사항
4.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정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양성평등 정책을 위하여 심의·조정을 요구하는 사항

제3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지역경제과장, 여성청소년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다.

1. 양성평등 정책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정선군의회의원 1명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양성평등 정책 업무담당이 된다.

제32조(위원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3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한 경우

제3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제30조의 사항을 심의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기금지원 대상사업의 신청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를 대표로 하는 기업 등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2.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신청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신청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대한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기피신청이 심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각하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군수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제35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6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7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소관사항을 분야별로 연구·검토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38조(수당 등)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선군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에서 업무수행을 위하여 조사·연구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4장 정책의 양성평등 효과 증진

제39조(성별영향분석평가) 군수는 「정선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제3조에 따라 모든 정책과 도시기반 시설, 공공이용시설, 주거 공간 등의 공급 및 이용에 있어 성인지적 관점의 사전평가를 실시하여 여성 과 남성에게 가져올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하여 개선방안을 정책에 반영하는 등 양성평등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0조(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군수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같은 법 제53조의2에 따라 이를 재정부문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

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1조(성인지 통계) 군수는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보급하여야 한다.

제42조(양성평등 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지원) 군수는 제39조부터 제41조에 따른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등 양성평등 정책의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도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3조(기금의 설치 등) ① 군수는 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선군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대하여는 「정선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다.

제5장 보칙

제44조(사전협의) 소속기관의 장이 양성평등을 촉진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입안할 때에는 여성정책 관련 부서와 사전에 협의하고 그 추진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정선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여성발전계정”을 “양성평등계정”으로 한다.

제5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양성평등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2. 「정선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6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3. 다문화가족 등의 가족지원 사업
4. 그 밖에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정선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정선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른 정선군양성평등위원회가 대신한다.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개 정 이 유

-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지역 사회에 양성평등의식을 확산시킴으로써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양성평등사회를 이루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조례의 제명을 「정선군여성발전기본조례」에서 「정선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변경함.
-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여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7조)
-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할 때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함(안 제9조)
- 양성의 평등한 사회생활 및 가족생활을 위하여 공직 등의 참여 촉진, 경제활동 참여 촉진, 평등한 가족생활, 모·부성의 권리보장, 양성평등 의식제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
- 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방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제17조까지)
- 여성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여성의 복지증진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 양성평등의 촉진 등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여성단체 등의 시민사회와의 협력, 여성의 국제협력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정선군양성평등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29조부터 제38조까지)
- 정책의 양성평등 효과 증진을 위한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서 작성, 기금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제39조부터 제43조까지)
-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5조)

제233회 정선군의회(2016. 10. 21.)에서 의결된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1월 10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527호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3년”을 “5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위탁기간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u>3년</u> 으로 한다. 다만, 위탁 취소 사유 발생 등 계속 위탁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재 위탁 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제8조(위탁기간) ① ----- <u>5년</u> ----- ----- ----- ②·③ (현행과 같음)

개 정 이 유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의 위탁계약기간이 “5년 이내로”에서 “5년으로” 2016. 8.4. 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이를 개정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개정(안 제8조)

제233회 정선군의회(2016. 10. 21.)에서 의결된 정선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1월 10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528호

정선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정선군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9조에 따라”로, “보호작업장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를 “보호작업장의 설치 및 운영에”로 한다.

제3조 중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를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로 한다.

제4조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5조의 제목 “(고용대상 및 선정순위)”를 “(이용대상 및 선정순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고용대상”을 “이용대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제7조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제7조제4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4항) 전단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8조 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7조에 따른”으로,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위탁운영 사업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10조제1항 중 “제4조의 규정”을 “제4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를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소홀히 하여”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2조제1항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하여 사용된”을 “사용된”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고용장애인 및 직원 급여와 운영유지비”를 “근로장애인의 임금 지급과 복리 후생을 개선하는 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을 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및 시설의 일반적인 관리운영비 또는 기능보강비로 사용 하려는 경우에는,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 해당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제2호 중 “고용장애인 및 직원”을 “근로장애인 및 시설 종사자”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16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위탁기간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부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정선군 장애인 보호작업장을 설치하고, <u>이의 운영에 관하여</u>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59조에 따라 ----- ----- <u>보호작업장의 설치 및 운영에</u> ----- -----.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u>자를</u> 말한다.	제3조(정의) ----- -----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4조(업무 및 기능) 작업장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4. (생략) 5. <u>기타</u>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업무 및 기능) ----- ----- 1. ~ 4. (현행과 같음) 5. <u>그 밖에</u> -----
제5조(고용대상 및 선정순위) ① 작업장 고용대상 장애인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으로 생산 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 중 일반 사업장에 취업이 곤란한 제가 장애인으로 근로가 가능한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 ② 제1항 중 장애인 희망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거 수탁자가 결정한다. 1. · 2. (생략) 3. <u>기타</u> 수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이용대상 및 선정순위) ① ----- <u>이용대상</u> ----- ----- ----- -----. ② ----- -----. 1. · 2. (현행과 같음) 3. <u>그 밖에</u> -----
제7조(위탁관리) ① 군수는 작업장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u> 에 위탁하여 운영관리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58조에서 정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단체 2. 제1호와 유사한 시설운영 또는 사회복지사업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단체 3. 작업장의 운영능력과 그에 필요한 재력이 있는 비영리법인·단체 ② (생략) ③ (생략)	제7조(위탁관리) ① ----- ----- <u>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u> ----- -----. <삭 제> <삭 제> <삭 제> ④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장을 수탁운영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 중에서 수탁운영자를 지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위탁운영결정통지서를 교부한다. 위탁운영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위·수탁 협약)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장을 위탁운영 관리할 때는 군수와 수탁자 상호 간 위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협약 체결하여야 하며, 권리와 의무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공증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기간) ① 위탁운영 사업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하며, 위탁취소사유 발생 등 계속 위탁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3년의 기간 단위로 재위탁 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 야 한다.

②·③ (생 략)

④ 제3항의 의무를 소홀히하여 시설의 이용자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수탁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⑥ (생 략)

제11조(관리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작업장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2조(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다.

1. ~ 4. (생 략)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작업장 운영에 관하여 사용된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집기 등은 모두 정선군에 귀속된다.

② 제1항에 따라 -----

-----.

제8조(위·수탁 협약) 제7조에 따른 -----

----- 필요
한-----
-----.

제9조(위탁기간) ① 위탁운영 사업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 제4조-----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소홀히 하여 -----

-----.

⑤·⑥ (현행과 같음)

제11조(관리감독) ① -----

----- 그 밖에 -----
-----.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위탁의 취소) ① -----

-.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

② ----- 사용된 -----

-----.

제13조(수익금의 사용) ① 수탁자는 작업장의 수익금을 작업장 <u>고용장애인 및 직원 급여와 운영유지비에</u> 사용한다. ② 제1항의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은 시설 운영 개선에 재투자 할 수 있으며, 작업장 고용장애인 및 군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14조(승인)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생 략) 2. <u>고용장애인 및 직원</u>의 급여에 관한 사항 3. ~ 5. (생 략) 6. <u>기타</u>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u>관하여 필요한</u>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수익금의 사용) ① ----- --- 근로장애인의 임금 지급과 복리 후생을 개선하는 데--. ② 제1항의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을 시설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및 시설의 일반적인 관리운영비 또는 기능보강비로 사용 하려는 경우에는,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 해당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승인) ----- -----. 1. (현행과 같음) 2. <u>근로장애인 및 시설 종사자</u>----- 3. ~ 5. (현행과 같음) 6. <u>그 밖에</u> ----- 제16조(시행규칙) ----- <u>필요한</u> ----- -----.
--	---

개 정 이 유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거 위탁관리 대상,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의 위탁계약기간 개정(2016. 8. 4)사항 적용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 복지시설 설치·운영기준 등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여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 장애인 사회참여 기회 부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위탁관리 대상 법인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으로 함(안 제7조제1항)
-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에 따라 위탁기간을 “3년” 에서 “5년” 으로 개정하고자 함(안 제9조제1항)
- 수익금을 작업장 근로장애인 임금지급과 복리후생 개선에 사용하도록 함(안 제13조제1항)
- “고용장애인 및 직원” 을 “근로장애인 및 시설 종사자” 로 변경 함(안 제14조제2호)

제233회 정선군의회(2016. 10. 21.)에서 의결된 정선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1월 10일

정 선 군 수

인

정선군 조례 제2529호

정선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영상문화를 군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정선군 작은영화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정선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정선군(이하 “군” 이라 한다) 지역에 설치하는 정선군 작은영화관(이하 “영화관” 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해서는 법령에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2장 명칭 등 및 업무

제3조(명칭 및 위치) 영화관의 명칭은 “아리아리 정선시네마” 로 하며, 위치는 정선군 정선읍 봉양7길 13에 둔다.

제4조(시설) 영화관의 시설(이하 “시설”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영관 2개관
2. 매표소 및 매점
3. 휴게실
4. 그 밖에 부대시설

제5조(업무) ① 영화관은 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의 문화욕구 충족 및 문화적 소외감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8호에 따른 영화의 상영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예술창작물의 상영

② 영화관은 관람하는 사람들이나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당 영화 등을 상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장 개관·휴관 및 관람

제6조(개관 및 휴관) ① 영화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개관한다.

1.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하여 휴관이 필요한 날
2. 그 밖에 군수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휴관할 경우에는 영화관 및 군 게시판,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미리 게시해야 한다.

제7조(관람료) ① 영화관의 영화 등을 관람하려는 사람은 관람료를 납부해야 한다.

② 관람료는 일반영화관 관람료의 8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관람료를 정할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관람료는 영화관의 입장 전에 매표와 함께 납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매 등의 경우에는 미리 납부할 수 있다.

제8조(입장제한) 군수는 영화관에 입장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감염병 질환자
2. 술에 취하거나 고성방가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관람에 방해가 될 물품을 지닌 사람

제9조(관리 운영) 군수는 설치 목적에 맞게 영화관을 관리 운영해야 한다. 다만, 영화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제4장 운영위원회

제10조(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영화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정선군 작은영화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영화관의 관리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관람료의 결정 및 변경
2. 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계획의 수립
3. 제17조에 따른 계약해지 또는 취소
4.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문화예술 분야에서 활동하거나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군 소재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에 소속 중인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담당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및 위촉해제)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위원을 임기 중이라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2. 장기치료·여행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때
3. 품위손상이나 직무수행을 통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때

- 제13조 (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미한 안건이거나 긴급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
- 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선군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⑤ 위원회의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장 위탁운영 등

- 제14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영화관의 업무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위탁계획에 대하여 정선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단체 등 중에서 공개모집으로 위탁운영자를 선정한다.

1. 영화배급사

2. 영화관의 운영 경험이 있고, 영화배급이 가능한 법인·단체

-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수탁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하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 ③ 군수는 수탁자의 신청에 따라 해당 위탁업무에 대한 평가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의 동의를 얻을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연장하거나 재위탁할 수 있다.

- ④ 군수는 수탁자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관람료의 수입금으로 충당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부족한 경비가 있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 ⑤ 영화관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수탁자의 선정기준, 위탁조건·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르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할 수 있다.

- 제15조(수탁자의 의무·책임) ① 수탁자는 위탁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1.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2.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증·개축이나 내부시설의 개·변조
3. 담보제공이나 양도·전대(轉貸) 금지
4. 법령이나 조례 준수, 계약 및 군수의 지도·감독 사항 이행

- ② 수탁자는 위탁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책임을 진다.

1. 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멸실·훼손한 때의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 손해배상
2. 시설 내에서 발생한 각종 민·형사상 책임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손해배상을 위한 손해보험 가입. 이 경우 그 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 제16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의 위탁업무에 대해서는 영화관의 설치목적에 적합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 ②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운영사항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도·감독 또는 조사·검사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

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수탁자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7조(계약해지 등) 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때
2. 사업목적을 위반하거나 수입금·보조금을 다른 목적에 사용한 때
3.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현저히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때
4. 의무·책임에 관한 제15조에 위배된 때

②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90일 전까지 서면으로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③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 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위탁재산을 군수에게 되돌려 주어야 하며, 해당 재산 및 군수와 협의 없이 설치한 시설·장비에 대한 소유권·연고권, 그 밖의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 정 이 유

○ 군민에게 다양한 장르의 영상문화를 제공하여 도·농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가족중심의 여가문화 확산 등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

주 요 내 용

- 작은영화관의 설치목적, 명칭 및 위치, 시설의 구성 등을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 개관 및 휴관, 관람료, 입장제한,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 정선군 작은영화관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 위탁운영 시 위탁방법, 수탁자의 의무·책임, 지도감독,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제233회 정선군의회(2016. 10. 21.)에서 의결된 정선군 교통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1월 10일

정 선 군 수



정선군 조례 제2530호

정선군 교통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택시·버스 등 대중교통 종사자의 복지증진 및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교통회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교통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2장 설치 및 용도

제3조(설치 및 위치)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택시·버스 등 대중교통 종사자(이하 “운수종사자”라 한다)의 복지증진 및 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정선군 교통회관(이 조례에서 “교통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교통회관은 정선군 고한읍 고한리 산85-7번지에 둔다.

제4조(시설) 교통회관에 두는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의실, 사무실
2. 콜센터
3. 체력단련실
4. 편의시설
5. 그 밖의 부대시설

제5조(용도) 교통회관은 운수종사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이용한다.

1. 복리후생
2. 교육 및 연수
3. 브랜드택시 운영
4. 각종 운수단체 교육행사
5. 그 밖에 군수가 군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제3장 관리 운영

제6조(관리위탁) ① 교통회관은 군수가 직접 관리 운영한다. 다만, 그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운수종사자 법인·단체 등에게 관리위탁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능력,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관리를 위탁받은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공개모집에 따라 선정해야 한다.

제7조(협약체결 등) ① 군수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위·수탁협약 (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갱신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다.

③ 군수는 위탁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등) ① 수탁자가 위탁시설에 대하여 이행해야 할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수종사자의 권익 및 복지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2. 설치목적에 부합하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
 3. 보조받은 경비를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4. 해당 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수탁자는 위탁시설의 파손·고장 또는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해야 하며, 자신의 과실로 인하여 파손 또는 오손한 때에는 자기부담으로 원상복구 하거나, 해당 복구비용을 즉시 군수에게 납부해야 한다.
- ③ 수탁자는 위탁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2. 다른 사람에게 전대(轉貸)하는 행위
 3. 그 밖에 법령에서 해당 시설 안에 금지한 시설물이나 물품을 설치 또는 보관하는 행위

제9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위탁업무를 검사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 등을 감사하도록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검사 또는 감사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확인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협약취소 등)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협약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1. 제8조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2. 제8조제3항에 따른 제한행위를 위반한 때
3. 제9조의 지도·감독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때

제4장 보칙

제11조(준용) 교통회관의 관리 및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선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개 정 이 유

- 정선군 교통회관 준공 후 관리·운영 및 시설 관리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교통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자 함.

주 요 내 용

- 조례의 목적 및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 설치 및 용도를 규정함(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 관리위탁, 수탁자의 의무 및 지도·감독 등 관리운영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

규 칙

2016년도 제8회 정선군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정선군종합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11월 10일

정 선 군 수

인

정선군 규칙 제1276호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정선군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제22조의2”를 “제21조”로 한다.

제7조 중 “제22조제2항”을 “제23조의2제2항”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첨부서류란 라목 중 “향후 3년간”을 “향후 5년간”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수탁자 선정) ① 제2조에 의한 수탁운영 신청이 있을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규정에 의한 정선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에서 심의한다.	제3조(수탁자 선정) ① ----- ----- 제21조----- -----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7조(직원의 채용) 복지관의 직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을 갖춘 자를 채용하되, 사회복지관의 규모 및 수행하는 사업을 고려하여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직원의 채용) ----- ----제23조의2제2항----- ----- -----.

개 정 이 유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맞게 이를 개정하고자함.

주 요 내 용

- 수탁자 선정(안 제3조제1항)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에서 “제21조” 로 개정
- 직원의 채용(안 제7조)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 을 “제23조의2제2항” 으로 개정
- 위탁기간 변경에 따른 신청서류 제출 기간 변경(별지 제5호서식)
 - 첨부서류란 라목 “향후 3년간” 을 “향후 5년간” 으로 개정